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과학수사학과』 학사운영에 관한 내규

2017. 3. 2. 시행
2018. 3. 5. 개정
2020. 3. 1. 개정
2020. 9. 1. 개정
2021. 3. 1. 개정
2021. 5. 25. 개정
2022. 2. 21. 개정
2022. 10. 1.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성균관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과학수사학과(이하 “과학수사학과”라 한다)의 학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과정 목표) 과학수사학과의 교육과정 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과 과학의 융·복합적인 사고와 연구를 통해 과학수사 분야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한다.
2. 뛰어난 법률지식과 실무능력 및 투철한 직업윤리의식을 갖춘 과학수사전문가를 양성한다.
3. 과학수사의 역사, 이념, 원칙, 논리 등 과학수사에 관한 기초적 이론을 탐구한다.
4. 수사 및 조사, 감사, 검증과 감정 업무 분야의 전문지식을 습득한다.
5. 과학수사전문가로서 사회 각 영역에서 지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리더십과 사회에 대한 책임감 및 봉사정신을 기른다.
6. 인의예지를 바탕으로 풍부한 교양과 정서를 함양하고 인간, 사회 및 세계에 관한 건전한 가치관을 정립한다.

제3조(교육과정 구성) ①과학수사학과의 교육과정은 석사학위, 박사학위, 석·박사통합학위과정으로 구성한다.

②<삭제> (2020.3.1. 본항 개정)

제4조(교육과정 이수 방법) ①「석사학위과정」의 졸업소요학점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전공과목 12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2022.2.21. 본항 개정)

②「박사학위과정」의 졸업소요학점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전공과목 18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2022.2.21. 본항 개정)

③「석·박사통합학위과정」의 졸업소요학점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전공과목 3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2022.2.21. 본항 개정)

④학위논문 작성을 희망하는 2016학년도 이후 2019학년도 이내 입학자는 수료 전, 2020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논문심사신청 전까지 논문작성법 및 연구윤리 교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⑤학위과정별 학기당 수강신청 학점은 다음과 같다. (2022.2.21. 본항 개정)

과정	수료학점	학기당 수강신청 최대학점	비고
석사학위과정	24학점	9학점	
박사학위과정	36학점	9학점	2개 학기에 한하여 3학점 추가 수강신청 가능
석·박사통합학위과정	51학점	9학점	1개 학기에 한하여 3학점 추가 수강신청 가능

제5조(전공계열) 석사, 박사, 석·박사통합학위과정에는 다음과 같은 전공계열을 둔다.

1. 디지털포렌식 계열
2. 바이오포렌식 계열 (2021.3.1. 본항 개정)
3. <삭제> (2020.3.1. 본항 개정)

제 2 장 수업운영 및 수강신청

제6조(수업일수 및 학습량 부과) ①학기당 15주 이상의 수업을 운영한다.

②교강사는 효과적인 수업운영을 위하여 수강생의 좌석을 지정할 수 있다.

제7조(휴·보강실시) 교과목 담당 교강사는 휴강사유 발생 시 사전에 과학수사학과 학과장(이하 “학과장”이라 한다)에게 휴강신청서 및 보강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보강을 실시하여 수업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수강 학생들에게 휴강 및 보강계획을 안내하여 학생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반 편성 및 분반 기준) ①학과장은 교과목의 교육목표 및 운영 방식에 따라 강좌규모와 분반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개설강좌의 수강정원은 수강신청 전에 예고하여야 한다.

제9조(수업계획서 작성 및 전산입력) 교과목 담당 교·강사는 전자시간표 공시 전 소정기간 내에 수업계획서의 전산입력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10조(수강신청기간) ①수강신청은 학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며, 학위과정 및 학년(기수)에 따라 수강신청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장애학생의 수강신청절차는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제 3 장 시험과 성적

제11조(시험) ①교과목별로 성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학생은 해당과목 총 수업시간의 4분의 3이상을 출석하여야 그 과목의 시험에 응할 자격이 있다. (2020.3.1. 본항 개정)

③시험방법은 필기에 의한다. 다만 담당교수의 의견에 따라 구술·논문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할 수 없는 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험실시일전에 담당교수

의 승인을 얻어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추가시험의 방법은 담당교수가 정한다.

⑤제2항의 출석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에 참석하지 못하였으나 총장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출석을 인정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성적) ①성적은 시험성적, 출석상황, 과제평가, 학습태도, 토론 참여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②성적평가는 원칙적으로 절대평가 방식을 취하며 만점기준을 4.5으로 하며, 성적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

등급	평점	등급	평점
A+	4.5	C+	2.5
A	4.0	C	2.0
B+	3.5	D+	1.5
B	3.0	D	1.0
		F	0.0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과장이 지정하는 교과목에 대하여는 “P”(합격), “F”(불합격)로 평가하되, 성적등급과 평점은 부여하지 아니한다.

④학점을 인정하는 시기는 매학기말로 한다. 다만, 인정된 학점이라도 과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한다.

제13조(성적의 유보) <삭제>

(2020.3.1. 본조 개정)

제14조(성적의 공시 등) ①교과목 담당교수는 학기말시험 종료 후 2주일 이내에 성적평가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②성적에 이의가 있는 학생은 성적 공시기간 내에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③교과목 담당교수는 학생의 이의를 확인한 후 그 사유가 타당한 경우에는 소정기간 내에 성적을 정정할 수 있다.

④출석부는 3년간, 성적평가자료는 교과목 담당교수가 10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비전임교원의 경우는 학과장이 보관한다. (2020.3.1. 본항 개정) (2021.5.25. 본항 개정)

제15조(성적의 취소와 정정)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성적은 학과장이 이를 취소한다.

1. 사무 착오에 의한 성적
2.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과목의 성적
3. 학점 인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입대 휴학자에게 부여된 성적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성적은 F로 처리한다.

1. 총 수업시간수의 4분의 3이상 출석에 미달한 과목의 성적
2. 시험 부정행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과목의 성적
3. 시험 부정행위로 4주 이상의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 출교의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의 학기 성적 전부 (2020.3.1. 본항 개정)

③전산입력착오 등 학생의 잘못이 아닌 사유로 교과목 담당교수가 학과장에게 성적 정정을 신청하여 허가된 경우가 아니면 성적을 정정할 수 없다.

제 4 장 학사경고, 유급 및 제적

제16조(학사경고) <삭제>

(2020.3.1. 본조 개정)

제17조(유급) ①학력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유급하게 하며, 유급한 학년은 수업연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학력보완을 위하여 유급을 희망하는 자
 2.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한 자
- ②유급한 학생의 성적 중 유급학년에 취득한 성적은 무효로 한다.

제 5 장 논문제출자격시험

제18조(논문제출자격시험) ①「석사학위과정」의 논문제출자격을 위해 영어 및 전공 3과목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②「박사학위과정」과 「석·박사통합학위과정」의 논문제출자격을 위해 영어 및 전공 3과목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2020.3.1. 본조 개정)

제19조(영어시험) ①<삭제>

②외국인 학생의 경우에는 영어 또는 한국어를 선택하여야 한다. 단, 영어가 모국어인 외국인 학생은 한국어를 선택하여야 한다.

③영어시험은 해당 언어 문헌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하여 평가하고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2020.3.1. 본조 개정)

제20조(영어시험의 면제) ①다음 각 호의 기준 이상을 충족할 경우 영어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1. 토플(TOEFL) : 550점(PBT), 215점(CBT), 80점(IBT) 이상 취득자
2. 토익(TOEIC) : 700점 이상 취득자
3. 텡스(TEPS) : 572점 이상 취득자
4. 지텔프(G-TELP) : 2등급 60점 이상 또는 3등급 80점 이상 취득자

②석사학위과정 재학생 중 성균어학원에서 개설하는 영어시험 대체강좌를 수강하여 시험에 합격한 자는 영어시험을 면제한다.

제21조(전공시험) ①전공과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사학위과정 : 15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균성적이 3.0이상인 자
2. 박사학위과정 : 27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균성적이 3.0이상인 자
3. 석·박사통합학위과정 : 39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균성적이 3.0이상인 자

②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③전공과목에 불합격한 자는 불합격한 과목에 한하여 다시 응시할 수 있다.

④전공과목은 전공계열별 필수 1과목과 선택 2과목으로 구성한다.

제22조(출제위원) 논문제출자격시험의 출제위원은 학과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학과장이 정한다.

제23조(시험 실시 및 자료 보관기한) 논문제출자격시험은 매 학기 1회 실시하며, 실시결과를 학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결과에 따른 자료는 10년간 보관한다.

(2020.3.1. 본조 개정)

제 6 장 논문지도

제24조(논문지도교수) ①각 학위과정 학생은 논문제목을 기재한 연구계획서와 지도교수 선정원을 지도를 희망하는 교수의 동의를 거쳐 2학기 시작 월(3월 또는 9월)에 소속 학과장(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학위청구논문 지도교수(이하 지도교수)의 지정은 학과장의 검토와 승인에 의해 이루어지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학과장은 지도교수의 변경을 권유할 수 있다. (2020.3.1. 본항 개정)

②지도교수는 중도에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지도교수로부터 계속 논문지도를 받을 수

없게 될 때에는 학과 운영위원회의 제청에 의하여 학장이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

③논문주제가 복합적일 경우 또는 효과적인 논문지도를 위해 필요하다고 학과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생의 희망에 의하여 2명의 지도교수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교내 타 학과 전임교원을 참여시킬 수 있으나, 지도교수 1인은 반드시 소속 학과 전임교원으로 정하여야 한다.

④효과적인 논문지도를 하기 위하여 논문지도 학생 수를 지도교수 1인당 석사학위과정은 5명,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학위과정은 3명으로 제한한다. 다만, 수료 학생은 지도교수별 최소 배정 인원 산정에서 제외한다.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학과의 사정에 따라 논문지도 학생 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학과장이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25조 <삭제>

(2020.3.1. 본조 개정)

제 7 장 논문심사

제26조(학위청구논문 예비심사)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고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휴학생 포함)는 예비심사원을 제출할 수 있다.

1. 석사학위과정 : 15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균성적이 3.0이상인 자
2. 박사학위과정 : 27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균성적이 3.0이상인 자
3. 석·박사통합학위과정 : 39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균성적이 3.0이상인 자

②예비심사 대상자는 예비심사원 제출 시 논문계획서(또는 예비심사용 논문) 및 연구윤리준수서약서를 첨부하여 학위논문심사 1개 학기 전에 학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예비심사위원은 학과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학과장이 위촉하며, 각 학위과정 공히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본교 전임교원 3인 이상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은 각 학위과정 공히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본교 전임교원 3인 이상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예비심사는 1회 실시하되 전공별 전임교원 및 대학원재학생의 참석 하에 공개발표를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형식은 학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⑤예비심사의 판정은 심사위원 2/3의 찬성을 합격으로 하며, 심사결과는 학과장에게 보고한다.

제27조(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 절차) ①학위청구논문 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논문심사료를 납부하고 소정서식의 “학위청구논문 심사원” 및 연구윤리준수서약서를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학위청구논문은 한글 또는 영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한글로 작성하는 경우 영어 논문요지를, 영어로 작성하는 경우 한글 논문요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학위청구논문 제출자는 논문심사를 위하여 그 원고를 석사학위는 3부, 박사학위는 5부를 소정기일 내에 지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20.3.1. 본조 개정)

제28조(논문심사) ①학위청구논문심사(이하 ‘논문심사’라 한다)는 공개발표 및 심사 1회와 최종심사 1회로 총 2회 실시한다.

②논문심사의 1차 심사인 공개발표에는 전임교원 및 대학원 재학생이 참석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학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다만, 논문 내용의 보안이 요구되는 경우 지도교수의 사전 요청으로 공개발표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③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를 위한 토론은 비공개로 진행한다.

④심사위원은 학과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학과장이 위촉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비심사위원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석사학위논문심사 : 3인 이상
 2. 박사학위논문심사 : 5인 이상 <삭제> (2021.5.25. 본항 개정)
- ⑤논문심사의 판정은 석사학위과정 2/3 이상의 찬성, 박사학위과정 4/5 이상의 찬성을 합격으로 판정한다.
- ⑥심사위원장은 석사학위과정은 심사위원 중에서 학과장이 위촉하고, 박사학위과정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심사 후 그 결과보고서를 학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기간경과생의 예비심사 및 심사 신청자격) <삭제> (2021.5.25. 본항 개정)

제30조(학위논문제작) ①논문심사에 합격한 학생은 '석·박사 학위논문 작성방법(학위논문인쇄 및 제본 요령)'에 의거하여 논문을 제작하여 본교 학사일정표에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출부수 및 기타사항은 「대학원 학위논문 제출지침」에 따른다.

제 8 장 졸업요건 등 (2021.5.25. 본항 개정)

제31조(학위취득요건) ①총 평점평균 3.0 이상의 성적으로 학칙 제39조 소정의 과정을 수료하고 과학수사학과 졸업시험에 합격한 학생이 각 학위과정의 학위취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졸업인증을 받은 때에는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위원회(이하 “대학원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학위를 수여한다.

②「석사학위과정」의 학위취득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 4학기
2. 수료학점 24학점 충족
3. <삭제> (2022.2.21. 본항 개정)
4. 졸업기준 성적 총 평점평균 3.0/4.5 이상
5. 논문제출자격시험 합격
6. 학위논문 심사 합격
7. 논문 표절검사 확인서 (2020.3.1. 본항 신설)

③「박사학위과정」의 학위취득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 4학기
2. 수료학점 36학점 충족
3. <삭제> (2022.2.21. 본항 개정)
4. 졸업기준 성적 총 평점평균 3.0/4.5 이상
5. 논문제출자격시험 합격
6. 학위논문 심사 합격
7. 논문 표절검사 확인서 (2020.3.1. 본항 신설)
8. 등재지 이상의 학술지에 1편 이상의 논문을 주저자로 발표하여야 한다. (2020.3.1. 본항 신설)

④「석·박사학위과정」의 학위취득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 8학기
2. 수료학점 51학점 충족
3. <삭제> (2022.2.21. 본항 개정)
4. 졸업기준 성적 총 평점평균 3.0/4.5 이상
5. 논문제출자격시험 합격
6. 학위논문 심사 합격
7. 논문 표절검사 확인서 (2020.3.1. 본항 신설)
8. 등재지 이상의 학술지에 1편 이상의 논문을 주저자로 발표하여야 한다. (2020.3.1. 본항 신설)

⑤ KOICA 사업 등으로 입학한 석사학위과정 외국인 학생의 학위취득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2022.

10. 1. 본호 신설)

1. 4학기 이상 등록(3학기 등록 및 1개 학기는 집중학기로 대체 가능)
2. 수료학점 30학점 충족(단 30학점 중 24학점(전공 12학점)외에 전공 6학점을 추가 이수하여야 함)
3. 졸업기준 성적 총 평점평균 3.5/4.5 이상
4. 논문제출자격시험 합격
5. 학위논문 심사 합격
6. 논문 표절검사 확인서

제31조의2(학위논문제출 면제) ①석사과정학생으로 3학기 이상 등록하고 18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 성적이 평점평균 3.5/4.5 이상인 경우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 자는 학위논문제출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학위논문제출 면제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학위취득이 가능하다.

1. 4학기 이상 등록하고 30학점 이상 취득한 경우. 단, 30학점 중 수료학점 24학점(전공과목 12학점) 외에 전공과목 6학점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함.
2. <삭제> (2022.2.21. 본호 개정)
3. 졸업기준 성적 총 평점평균 3.5/4.5 이상
4. 논문제출자격시험 합격
5. 프로젝트보고서 본심사 합격 (2022.10.1. 본호 개정)
6. 프로젝트보고서 표절검사 확인서 (2021.5.25. 본호 신설)

③학위논문제출 면제 심사는 제7장(논문심사)에 따라 논문 본심의 절차에 준하여 시행한다.

(2020.3.1. 본조 신설, 2020.9.1., 2021.5.25., 2022.10.1. 본조 개정)

제32조(자격증 요건) <삭제> (2022.10.1. 본조 개정)

제 9 장 장학금지급

제33조(지급대상) 본 학과 학생으로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2. 신입생 중 입학성적이 우수한 자
3. 가정형편이 곤란하여 학비조달이 어려운 자
4. 전업학생으로서 학과 내에서 근로봉사하는 학생
5. 학과 운영위원회에서 지급대상자로 의결된 자 (2021.5.25. 본호 개정)

제34조(장학금 지급 제한) ①장학생 선발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하여서는 아니된다.

1. 유기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이 해제되고 한 학기가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직전학기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3.0미만인 자
3. 재입학 후 1학기가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기타 학칙 위반자

②장학금의 지급은 원칙적으로 한 학기당 한 개의 종류에 한한다. 다만, 교육조교(TA)장학금은 예외로 한다. (2021.5.25. 본항 개정)

제 10 장 학과 운영위원회

제35조(설치 및 구성) ①학과의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②위원회는 학과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과장이 된다. (2018.3.5.,

2020.3.1. 본항 개정)

③위원장은 조교 1인(박사급 초빙교수 가능) 또는 행정직원으로 하여금 회의를 보조하게 할 수 있고, 회의록 작성은 별표6에 의한다. (2018.3.5., 2020.3.1., 2021.5.25. 본항 개정)

제36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의 입학 및 수료에 관한 사항
2. 수업계획 및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3. 논문제출자격시험 및 외국어시험에 관한 사항
4. 공개강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7조(회의) ①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1 장 기타사항

제38조(집중과정) ① 학과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여름방학 기간 교과목을 개설하여 집중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집중과정은 6학점 이내에서 이수 가능하며, 해당 과정에 대한 등록금으로 정규학과와 같이 수강학점 상관없이 일정금액을 납부한다.

③ 집중과정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 기간내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휴학생은 수강할 수 없다.

④ 그 외의 사항은 「집중과정 운영 지침」 제 1장, 제 3장을 준용한다.

부 칙 (2017. 03. 02.)

본 개정 내규는 2017. 03. 02.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03. 05.)

본 개정 내규는 2018. 03. 05.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03. 0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20. 03. 01.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사학위학점 이수졸업제에 관한 특례) 이 개정 내규 시행일 이전 입학자에 대하여는 본인이 신청에 따라 이 개정 내규를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2020. 09. 01.)

이 개정 내규는 2020. 09. 0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03. 01.)

이 개정 내규는 2021. 03. 0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05. 25.)

이 개정 내규는 2021. 05. 25.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02. 21.)

이 개정 내규는 2022. 02. 2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10. 01.)

이 개정 내규는 2022. 10. 01.부터 시행한다.

<별표 양식>

<별표1> 석사학위논문제출 면제신청서

<별표2> 프로젝트보고서 (본심사)

<별표3> 석사학위 프로젝트보고서 본심사 결과 보고서

<별표4> 과학수사학과 운영위원회 회의록

<별표1> 석사학위논문제출 면제신청서

20____년도(Academic Year) ____학기(Semester)

석사학위논문제출 면제신청서

(Dissertation Submission Exemption Application)

☐ 인적 사항 (Student's Information)

학 과 Department			
학 번 Student Number		성 명 Name	
연락처 Point of Contact	(Mobile Phone)		
	(E-Mail)		

☐ 논문 대체 방식 (Way for Dissertation Substitution) (해당하는 방식에 V표시)

추가 학점 이수 (Additional Credits Completion)	
논문실적/보고서 등 (Research Performance / Report etc.)	

※ 소속 학과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논문대체 요건을 갖추어야 함

(Substitution requirements should be qualified by the way that the department designated.)

본인은 학과에서 정한 상기 논문대체 방식을 이수하여
학위논문 제출을 면제받기 위해 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I submit this application for dissertation submission exemption and
confirm that I will follow the above process designated by the department.

제출일(Applicant Date): 20____년(Year) ____월(Month) ____일(Day)

신 청 자(Student) : _____ (서명/Signature)

학과장 귀하

<별표2> 프로젝트보고서(본심사)

20__년도 학기 프로젝트 보고서 (본심사)

(20__ - __ The Final Project Report - Master' s Degree)

학과 Department	과학수사학과	학기 Semester	
학번 Student PIN		성명 Name	
휴대폰번호 Mobile		이메일 E-mail	

20__ - __ 프로젝트 보고서 Project Report Details

본 문 작 성 요 령

1. F7(편집용지)에서 용지종류 'A4(국배판) [210 x 297 mm]' 선택 후 폭 210, 길이 297, 왼쪽·오른쪽 여백 20, 위쪽·아래쪽 여백 15, 머리말·꼬리말 0으로 설정하여 작성한다.
2. 본문의 순서는 1, 가, 1), ①, ㉠, 등으로 하고 제목은 고딕체 (폰트 14), 본문은 바탕체 (폰트 10)로 작성한다.
단, 본문 활자 중 목적에 따라 중요 부분은 고딕체로 사용할 수 있다.
3. 장은 원칙으로 페이지를 바꾸어 시작한다.
4. 페이지 번호는 하단 중앙 끝에 10폰트 활자로 한다.
5. 각주는 해당 페이지 하단에 8폰트 활자로 표기하며 본문과 구분토록 한다.
6. 모든 글은 한글로 표기하되, 해독하기 어려운 전문용어는 한문 또는 영문으로 ()내에 표기한다.
7. 페이지 수는 아래의 '본문부터 시작한다.

본 문 순 서

1. 연구 제목(고딕,14)
2. 연구 목적(1장)
3. 연구 방법(1장)
4. 연구 내용(2장)
 - 가. 본문 (바탕, 10)
 - 1)
 - 가)
 - (1)
5. 참고문헌(1장)
 - 가. 단행본
저자명, 「 」,
 - 나. 논문
저자명, “ ”,

제출일 Date	년 YYYY	월 MM	일 DD	성명 Name	성명 Name	서명 Signature
-------------	-----------	---------	---------	------------	------------	-----------------

<별표3> 석사학위 프로젝트보고서 본심사 결과 보고서

석사학위 프로젝트리포트 본심사 결과 보고서

(Report for the Final Project Report Defense Result-Master's Degree)

20__년도(Academic Year) __ 학기(Semester)

[석사학위 프로젝트리포트 심사 신청 내역]

학 과 Department			
학 번 Student No.		성 명 Name	
프로젝트 제목 (Title of Thesis)			

[심사 결과(Result of Final Project Report Defense)]

위 학생의 석사학위 프로젝트보고서 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I report the result of above student's Final Project Report Defense as below.

심사위원 Committee Members		내용심사 Dissertation		구두심사 Oral Presentation	
구 분(Role)	성 명 Name	합격 Pass	불합격 Fail	합격 Pass	불합격 Fail
심사위원장(Chair)					
심사위원(Member)					
지도교수(Advisor)					

※ 심사위원별로 합격/불합격 여부를 O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의견 (Integrated Opinion for Examination)]

※ 붙임 : 심사위원별 심사 보고서 각 1부

심사일(Date of Examination): 20__년(Year) __월(Month) __일(Day)

심사위원장 _____(인/서명)

학과장 귀하

석사학위 프로젝트리포트 본심사 보고서

(Report for the Final Project Report Defense-Master's Degree)

1. 심사 대상자 (Student for the Final Project Report Defense)

학 과 : _____
(Department)

성 명 : _____
(Name)

2. 내용 심사 결과 (Result for the Dissertation Examination)

합 격 ()
Pass

불합격 ()
Fail

3. 구두 심사 결과 (Result for the Oral Presentation)

합 격 ()
Pass

불합격 ()
Fail

4. 심사의견 (Opinion)

위 학생의 석사 학위 프로젝트리포트 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I report the result of student's Final Project Report Defense as above.

심사일(Date of Examination): 20__년(Year) __월(Month) __일(Day)

심사위원 _____(인/서명)

심사위원장 귀하

<별표4> 과학수사학과 운영위원회 회의록

과학수사학과 운영위원회 회의록			
회 의 명	과학수사학과 운영위원회 회의록		
일 시		장 소	
참석위원			
회의안건			
○의결사항 -			
○과학수사학과 운영위원회 서명			
위 원 장 (과학수사학과 학과장)	교수	(인)	
위 원 (과학수사학과 학과장)	교수	(인)	
위 원 (과학수사학과 전임교수)		(인)	

법학전문대학원장 귀하